

# 서울특별시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

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<br>번호 | 161 |
|----------|-----|

발의년월일 : 2018년 10월 12일

발 의 자 : 서윤기 의원 외 12명

## 1. 주 문

제28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주요안건을 처리하고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별첨과 같이 요구합니다.

## 2. 제안이유

주요안건을 처리하고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함.

## 3. 참고사항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제42조

○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 제49조

##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

제28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주요안건을 처리하고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 제49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.

- 출석 장소 :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
- 출석 이유 : 주요안건 처리와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
- 출석 일시 : 2018.11.1.(목), 16(금), 19(월), 20(화), 12.14(금), 20(목) <6일>
- 출석 대상

### [ 서울특별시 ]

서울특별시장, 부시장, 실·국·본부장, 지방공사 및 공단의 임원, 출자·출연법인의 임원, 「지방자치법」 제113조에서 제116조까지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장 및 답변에 필요한 3급 이상 공무원 등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 제49조제3항에 규정된 자

### [ 서울특별시교육청 ]

서울특별시교육감, 부교육감, 실·국장 및 답변에 필요한 3급 이상 소속 공무원 등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 제49조제3항에 규정된 자